

의안번호	제 78 호
의 결 연 월 일	2007년 2월 일 (제 257 회)

충청북도재정보전금배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자	이필용의원 외 6인
발의연월일	2007년 2월 13일

충청북도재정보전금배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78
----------	----

발의연월일 : 2007년 2월 13일

발 의 자 : 이필용 · 강태원 · 박재국
연만흠 · 조영재 · 이종호
김환동(7인)

제정이유

「지방재정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련규정 정비 및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재정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련규정 정비

- 「지방재정법」 제24조의 2를 제29조로 하고(2005.8.4 개정),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의3을 제36조(2005.12.30 개정)로 함(안 제1조).
- 일반재정보전금 배분기준을 인구 60%, 징수실적 40%에서 인구 50%, 징수실적 40%, 재정력 10%로 변경(2006.11.23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하여 도내 시군간 재정불균형 완화(안 제6조제1항).

나. 일반재정보전금의 100분의 40은 도세징수실적에 따라 배분하고 있으므로, 시책추진보전금은 도세징수율이 우수한 시·군에

배분할 수 있도록 하여 도세징수율을 제고하고 또한 낙후지역 개발사업 또는 균형발전사업에 배분할 수 있도록 배분기준을 추가함(안 제6조제2항제3호 및 같은조 같은항 제4호 신설)

다. 재정보전금 배분내역을 6월과 12월에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재정보전금 운영의 투명성 확보(안 제12조 신설)

참고자료

- 관계법령 발췌

조례 제 호

충청북도재정보전금배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재정보전금배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충청북도재정보전금배분조례”를 “충청북도 재정보전금 배분조례”로 한다.

제1조중 “지방재정법 제24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의3”을 “「지방재정법」 제2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로 한다.

제6조 제1항중 “100분의 60”을 “100분의 50”으로 하고, “도세징수실적 비율에 따라” 다음에 “ 배분하며,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은 재정력지수(「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산정한 매년도 기준재정수입액을 기준재정수요액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가 1 미만인 시·군을 대상으로 1에서 당해 시·군의 재정력지수를 뺀 값을 기준으로 배분한다.”를 추가하며, 동조 제2항 제3호중 “도세징수실적”을 “도세징수율”로 하고,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낙후지역개발사업 및 균형발전 지원 사업

제12조를 제13조로 하고,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회 보고) 도지사는 매년 6월과 12월에 재정보전금 배분내역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 규정은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 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 24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 28조의 3에 규정된 시·군의 재정보전금 배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내 시·군 상호간의 재정형평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 1조(목적) ----- 「지방재정법」 제 29 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36조에 ----- ----- ----- ----- -----</p>
<p>제 6조(재정보전금의 산정·배분방법) ① 일반재정보전금의 산정방법은 일반재정보전금 총액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은 최근 주민등록 인구수를 기준으로 도 전체의 인구수에서 당해 시·군의 인구수 비율에 따라 배분하고,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은 도 전체의 도세징수실적에서 당해 시·군의 도세징수실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말미에 자구 추가)</p>	<p>제 ----- ----- ----- ----- 6조(재정보전금의 산정·배분방법) ① ----- ----- 100분의 ----- 50----- ----- ----- ----- -----</p>

②시책추진보전금은 다음 각호의 회 해당하는 경우에 배분한다.

1. (생략)
2. (생략)
3. 도세징수실적이 우수한 시·군에
서 필요로 하는 사업
(신설)
4. (생략)
(신설)

제 12조(시행규칙) (생략)

----- 배분하며, 100분의 10에 해당
하는 금액은 재정력지수 (지방교부
세법」에 따라 산정한 매년도 기준
재정수입액을 기준재정수요액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가 미만인 시·군
을 대상으로 1에서 당해 시·군의
재정력지수를 뺀 값을 기준으로 배
분한다.

②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도세징수율이
제 -----

 4. 낙후지역개발사업 및 균형발
제 전 지원 사업
 5. (현행과 같음)
- 12조(의회 보고) 도지사는 매년 9월
과 12월에 재정보전금 배분내역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13조(시행규칙)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발췌

□ 지방재정법

제29조 (시·도의 시·군에 대한 재정보전) 시·도지사(특별시장을 제외한다)는 시·군에서 징수하는 광역시세·도세(공동시설세와 지방교육세를 제외한다)의 27퍼센트(인구 50만 이상의 시와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의 경우에는 47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군에 대한 재정보전금으로 확보하여 인구, 징수실적, 당해 시·군의 재정사정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시·도(특별시를 제외한다)의 관할 구역 안의 시·군에 배분하여야 한다.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6조 (재정보전금의 종류와 배분) ①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보전금의 종류는 시·군의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보전하기 위한 보전금(이하 "일반재정보전금"이라 한다)과 시·군의 지역개발사업 등 시책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보전금(이하 "시책추진보전금"이라 한다) 및 「지방교부세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통교부세가 교부되지 아니하는 시·군에 대하여 그 재정적 결함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보전금(이하 "특별재정보전금"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일반재정보전금의 재원은 재정보전금 총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시책추진보전금의 재원은 재정보전금 총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특별재정보전금의 재원은 일반재정보전금의 일부 금액으로 하되, 경기도의 경우에는 일반재정보

전금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광역시 및 경기도 외의 도의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일반재정보전금을 배분함에 있어서는 일반재정보전금 총액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특별재정보전금을 공제한 총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당해 시·군의 인구수에 따라 배분하고,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은 당해 시·군의 광역시세·도세 징수실적에 따라 배분하며,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은 재정력지수(「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산정한 매년도 기준재정수입액을 기준재정수요액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가 1 미만인 시·군을 대상으로 1에서 당해 시·군의 재정력지수를 뺀 값을 기준으로 배분하고, 특별재정보전금은 당해 시·군의 재정결함금액에 비례하여 배분하되, 인구가 20만 미만인 시·군의 재정결함금액의 70퍼센트를 우선 배분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23>

④일반재정보전금·시책추진보전금 및 특별재정보전금의 구체적인 배분기준·산정방법 및 배분시기 등에 관하여는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조례(규칙)안 검토의뢰서

법제번호	
------	--

수 신 : 의회사무처장
 참 조 : 의 사 담 당 관

선 결	처 장		결 재 · 공 람	담 당 관	전 결
	접 수	일 시			담 당
번 호				담 당 자	
처리과					

다음과 같이 조례(규칙)안의 검토를 의뢰합니다.

**1. 건 명 : 충청북도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 · 개정의 필요성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제정된 조례도서 동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련규정 정비 및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 보완

3. 현행제도의 문제점(구체적)

4. 제(개)정방향

붙임 「충청북도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참조

의뢰의원 : 박재국 (인)
 (기획행정위원회)

의뢰일자 : 2006. 8. 8.

전화번호 : 220 - 5021

※ 참고 : 조례(규칙)안 검토를 의뢰하실 때는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주시고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